제97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핵심장치등의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(신설) ○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을 받은 내용 중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의 경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, 그 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▶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17 2.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기준(신설) ○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의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·외 시험기관 지정 기준 마련 ▶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0조의23	1.비중요 2.비중요
2	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세부기준(신설) ○ 핵심장치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시설·장비·인력 등의 세부기준 마련 ▶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14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고상식 시설 설치기준(종계·종오리업, 닭·오리 사육업)(신설) ㅇ 오리사육업 등에 현대화된 고상식 시설*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, 농가 스스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* (시설기준)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(일반건축물), 입식 · 출하에 용이한 구조 · 설비 등을 갖출 것 ▶축산법 시행령 제14조 2.오리 분동통로 설치기준(강화) ㅇ 오리 분동통로에 대한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, 예외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▶축산법 시행령 제14조	1.비중요 2.비중요
4	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정안 (산림청)	1.보전산지 지정해제 적합성 판단기준(신설) ㅇ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▶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6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산지특성평가 방법 및 기준(신설) ㅇ 산림 현황,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, 대상 산지의 입지, 산림생태 등 산지특성평가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, 산지특성평가 결과의 수정·보완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과 절차를 정함 ▶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7조	
5	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외국인선원의 고용기준 결정(신설) ㅇ 외국인선원 고용기준의 결정방식 등 개선(안 제3조) - 외국인선원의 도입규모, 승선 허용범위 등 고용기준을 노·사 이해당사자,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(←현행: 노·사단체의 자율적 합의 필요) ▶선원법 제115조 ▶선원법 시행령 제39조 ▶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	1.비중요
6	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요건 강화(강화) ㅇ 이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▶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 관리 강화(강화) ㅇ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을 사용 시 환자 등에 대한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 의무화 ㅇ 평가유예신의료기술등의 위해 수준이 높을 시 퇴출 기전(사용 중단 조치) 마련 ▶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3.의료기술 재평가(신설) ㅇ 의료기술의 전주기적 관리를 위한 재평가 근거 규정 신설 및 그 결과에 대한 활용 규정 ▶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3	
7	점자법 시행령 개정안 (문화체육관광부)	1.점자교원의 자격요건(신설) ㅇ 점자교원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을 정함. ㅇ 점자교원 1급 자격 요건: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ㅇ 점자교원 2급 자격 요건: 가,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.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교육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경력이 인정되는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하거나 점역·교정사 3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.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영역별 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 되도록 이수할 것 ㅇ 점자 교육 경력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1.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2.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3.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4.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교육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 ▶점자법 제11조 ▶점자법 시행령 제4조 2.점자교육원 지정(신설) ㅇ 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으로 상근 책임자 1명 및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을 갖출 것과 강의실 및 사무실, 점자교육에 필요한 교재·교구, 점자출판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정함.	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○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. ○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, 법인 또는 단체는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. ▶점자법 제11조 ▶점자법 시행령 제6조 3.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(신설) ○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제1호, 제2호, 제4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 규정 - 점자정책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 -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무 - 점자능력 검정 시험에 관한 사무 ▶점자법 제11조, 제11조의2▶점자법 시행령 제12조	
8	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의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(신설) ○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자동판매기의 옥외	1.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설치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▶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, 제51조 2.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(신설) ㅇ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▶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	
9	헌혈기록카드 고시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변종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 위험지역 체류 시 헌혈제한 기준 강화(강화) ㅇ '80년 이후 영국, 프랑스 이외에 아일랜드에서 수혈한 자도 헌혈 제한 대상으로 추가 ▶헌혈기록카드 고시 전체	1.비중요
10	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정(신설) ㅇ 인정대상 범위(안 제2조), 인정절차 마련(안 제3조부터 제6조) ㅇ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 범위 등 규정(안 별표1) ▶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▶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▶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1	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(교육부)	1.자유학기 운영 횟수(강화) ㅇ 중학교 및 특수학교(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)의 장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·운영하도록 함 ▶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	1.비중요
12	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(교육부)	1.자사고 법인전입금 기준(신설) ㅇ 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가 갖추어야 할 법인전입금 기준 및 자사고의 법인전입금 기준 규정 ▶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	1.비중요